

국가지원지방도20호선(포항상원~청하) 건설공사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8. 02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기존 2차로 국가지원지방도20호선이 선형 불량, 도로폭 협소 및 중단 급경사 등의 도로시설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시 교통사고 위험도가 “매우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어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계획(2011~2015)에 반영된 2차로 시설개량 사업임
- 기존 2차로의 선형 불량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구간 선형 개량, 길어깨 확장, 보도 설치 등의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한편, 본 사업시행으로 경상북도 관내 시·군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항, 경주, 영덕, 울산지역 산업 물동량의 수송거리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며, 경북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피서철 동해안 접근성 제고 및 지·정체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p>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p> <p>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p> <p>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u>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u>하여야 한다.</p>	<p>제4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p> <p>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u>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u>하여야 한다.</p>

1.3 추진경위 및 계획

- 2011. 11. : 제3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11~'15)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 교통량 13,970대/일, B/C=0.43, AHP=0.319
 - 교통사고 위험도 “매우위험” 등급
- 2012. 02. : 제3차 국토·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2013. 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11.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14. 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전략) 심의
- 2014. 11. ~ 12.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14일간)
- 2014. 12. ~ 2015.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 설명회 : 2014. 12. 18~19 (환여동주민센터, 흥해읍사무소, 청하면사무소)
- 2014. 12. ~ 2015.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 2015. 12. 0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평가과-7323)
- 2015.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15. 12.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검토서 협의 요청
- 2015. 12.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 생략 가능 의견회신(환경평가과-7915)
- 2016. 07. ~ 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설명회 : 2016. 07. 27~28 (환여동주민센터, 흥해읍사무소, 청하면사무소)
- 2016. 07. ~ 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18. 01. 19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환경평가과-535)

1.4 사업의 내용

가. 시간적 범위

- 공용개시연도 : 2021년
 - 목표연도 : 2040년
-

나. 공간적 범위

○ 과업구간

- 1공구

- 시 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여동
- 종 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 2공구

- 시 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 종 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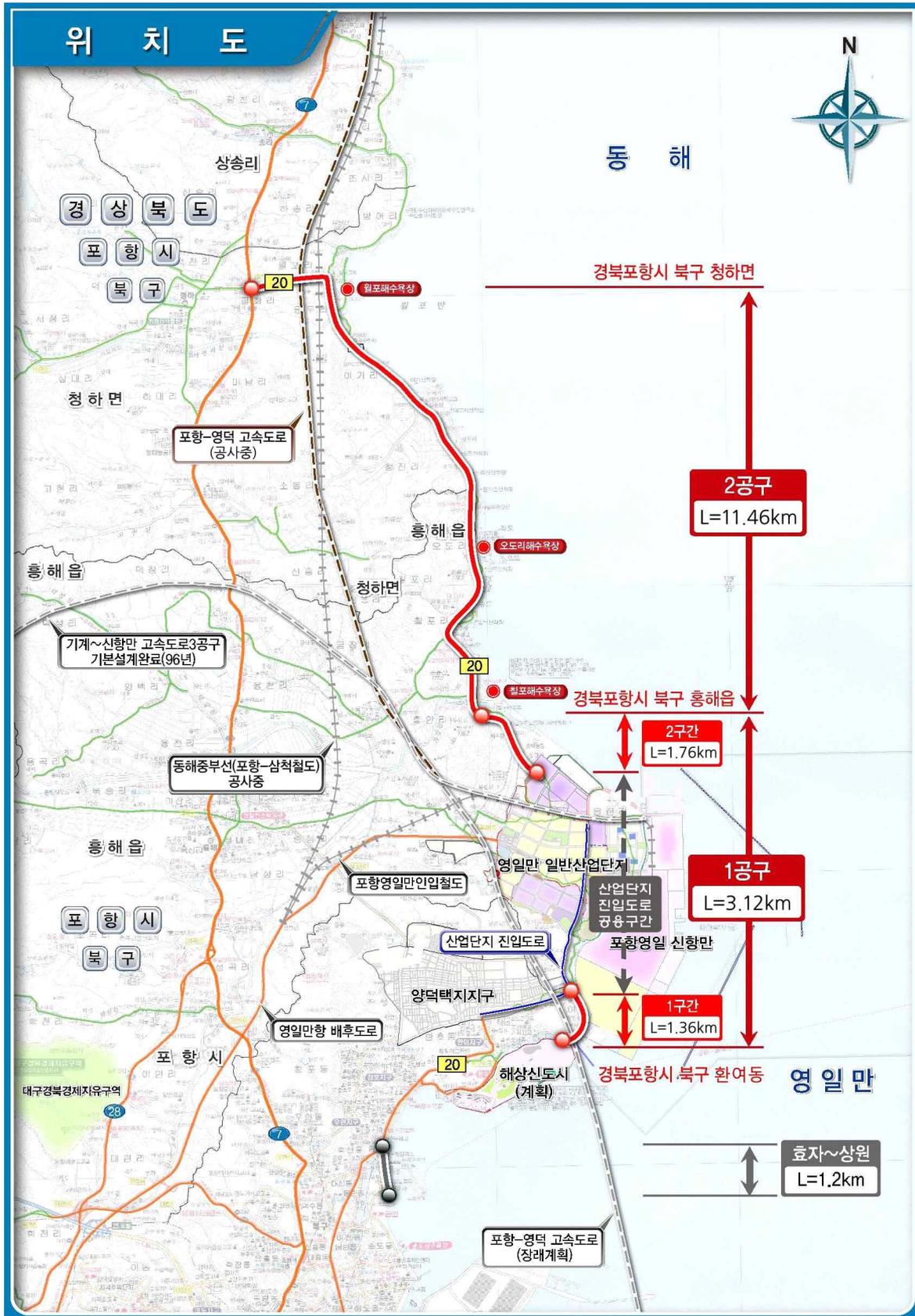
○ 연 장

- 1공구 : 3.12km (1구간 1.36km, 2구간 1.76km)
- 2공구 : 11.46km

다. 주요 사업내용

- 계 획 명 : 국가지원지방도20호선(포항상원~청하) 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승 인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1 공 구		2 공 구	전 체
	1 구 간	2 구 간		
연 장	1.36km	1.76km	11.46km	14.58km
도로폭원	20.0m (4차로 신설)	10.5m (2차로 시설개량)	10.5~13.0m (2차로 시설개량)	10.5~20.0m (2차로 시설개량 및 4차로 신설)
설계속도	50km/hr	60km/hr	60km/hr	50~60km/hr
주요 구조물	○ 교차로 : 6개소 ○ 교량 : - ○ 터널 : 2개소/150m (복개형)		○ 교차로 : 17개소 ○ 교량 : 4개소/335m ○ 터널 : -	○ 교차로 : 23개소 ○ 교량 : 4개소/335m ○ 터널 : 2개소/150m



(그림 1-1) 위치도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

2.1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주관 행정기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www.eiass.go.kr) 및 신문[중앙일간지(전국매일신문), 지방일간지(대구신문)]에 광고하고, 주민 공람 실시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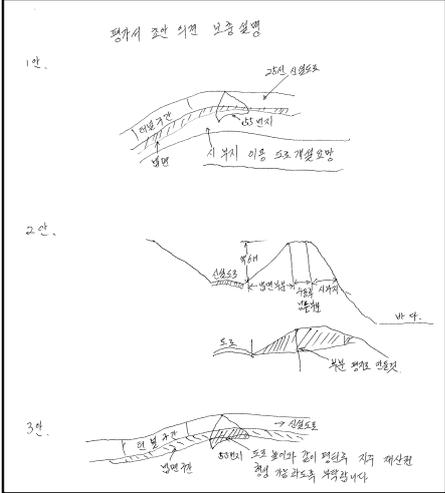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승인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시장	○ 포항시장
공람광고	○ 공고일시 : 2016년 07월 19일 (화) ○ 공고신문 - 중앙일간지 : 전국매일신문 - 지방일간지 : 대구신문
공람기간	○ 2016년 07월 19일 ~ 2016년 08월 10일 (20일,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포항시 건설과 ○ 포항시 환여동주민센터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 ○ 포항시 청하면사무소
주민설명회	○ 포항시 환여동주민센터 : 2016년 07월 27일 (수) 10:30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 : 2016년 07월 27일 (수) 14:00 ○ 포항시 청하면사무소 : 2016년 07월 28일 (목) 10:00
주민의견 제출기한	○ 2016년 08월 16일(공람만료 후 7일 이내)

2.2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결과

○본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주민의견으로, 반영 여부 및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김○○ 외 75인 (여남3통 주민일동)	<p>○여남동 주민 제당이 편입되는데 반대합니다. 제당이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주민의 맥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p> <p>○현재 계획 중인 국지도 20호선 구간 중 포항시 북구 여남동 3통을 지나가는 노선에 대하여 포항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일방적인 도로 설계로 인하여 마을의 경관과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마을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제당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생태터널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p> <p>○여남동 3통 주민들은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그로 인해 300년이 넘게 마을 제당에서 1년에 한번씩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해상 안전과 주민들의 무사귀환, 건강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5년마다 대풍어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와 제관이 정해주면 제주는 1년 동안 마을과 제주 주위의 흥사를 참관할 수 없으며, 제사한 달 전부터는 제주와 제관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자 흥사에 가지 않고 부부관계까지 가지지 않고 지켜오고 있는 마을의 제사를 지내는 제당을 파괴하고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로 인하여 마을이 나누어지고, 어렵게 상권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불가피하게 마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과 마을 제당을 관통하는 생태터널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로를 해안가로 돌려 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노선을 반대합니다.</p>	<p>○1공구 1구간(여남동) 해안측은 보존가치 및 희소성이 있는 해안단구, 해식애 등의 해안지형이 분포한 지역으로 해안측으로 도로개설시 해안지형 훼손 및 해양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일부 가옥 및 제당을 편입하는 것으로 노선을 계획함</p> <p>- 본 계획노선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시행 전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석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신문 공고, 지자체(포항시) 협조요청 등을 통하여 주민설명회 실시 후 선정한 노선임</p> <p>○편입예상 제당은 공사 시행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부지선정을 통한 이전, 보상 등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p>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하○○	<p>○지방도 25호선 개설시 개인토지 수용 보다는 옆 시부지 이용 도로개설 요망</p> <p>○환여동 55번지 도로편입 부지 중 법면 부분을 도로 높이와 같이 설치하여 법면 부분은 개인 재산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p> <p>○55번지 도로편입 부지는 수용하겠으나 법면부분은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 부탁드립니다.</p> 	<p>○1공구 1구간(여남동) 해안측(시부지)은 보존가치 및 희소성이 있는 해안단구, 해식에 등의 해안지형이 분포한 지역으로 해안측으로 도로개설시 해안지형 훼손 및 해양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이 예상되어 해안과 이격하는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음</p> <p>○절토 사면부를 평지로 조성할 경우 사토량 및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도로공사 구간 외 지역에 대한 공사는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p>	
공○○	<p>○평가서안에 동의함</p>	<p>○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시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함</p>	
김○○	<p>○평가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조속한 도로 건설로 여남동과 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오며, 원컨대 사면을 이용한 부체도로의 개설로 주민(일부 철거 또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편의성 도모를 요청합니다.</p> <p>1. 마을 좌측 입구로부터 대지 86번지, 산23-4번지 쪽</p> <p>2. 마을 우측 입구로부터 산23-2번지 쪽</p> <p>*대지 86번지와, 산23-2번지는 어림잡아 적었습니다.</p>	<p>○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시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함</p> <p>○1공구 1구간 시점부는 산림지형 통과 구간으로 부체도로 조성시 급경사 발생으로 안전성이 불리하며, 산림지역 훼손이 과다하게 발생됨</p> <p>○한편, 계획노선 좌측에 기존 임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존 임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남1터널 및 여남2터널 구간에 깎기부 점검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p>	
정○○	<p>○여남마을 통과지점(도로) 양 side로 산 위 터널까지 부체도로 설계반영(주민안전 도모)</p> <p>○여남동 산 14임 주변 도로 통과지점 옆에 바다 조망 및 쉬어가는 공간(주차장) 조성하여 도로교통 소통원활 및 품격있는 도로로 조성 요청함</p>	<p>○바다조망 및 쉬어가는 공간은 포함사에서 추진 중인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p>황○○ 외 1인</p>	<p>○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168, 168-1번지 소유주 황재식, 최시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인 2014.12.28.일 공청회가 대다수의 지주들에게 사전 안내가 되지 않아 미흡함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07.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이면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설계 확정 이전에, 해당 소유주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주시고 토지 소유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오니 민원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도 20호선 개설 시 개인토지 편입을 최소화 해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의 토지 앞면에 포항시가 소유한 시부지가 있습니다. 포항시 부지를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개인소유의 피해와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환여동 168, 168-1번지 바닷가 쪽의 법면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에 현 상태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면 환여동 168, 168-1번지 바닷가 쪽에서 발생하는 법면 부분을 없게 해주시고, 도로의 높이와 같게 하여 개인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고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 실제로 법면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지대로 실제로 잔여부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앞쪽이 절벽으로 남아있는 토지의 무게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설계 완료이전에 토지소유주와 공청회도 열어주시고 해당지주와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1공구 1구간(여남동) 해안측(시부지)은 보존가치 및 희소성이 있는 해안단구, 해식에 등의 해안지형이 분포한 지역으로 해안측으로 도로개설시 해안지형 훼손 및 해양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이 예상되어 해안과 이격하는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노선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시행 전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석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신문 공고, 지자체(포항시) 협조요청 등을 통하여 주민설명회 실시 후 선정한 노선임 <p>○절토 사면부를 평지로 조성할 경우 사토량 및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도로공사 구간 외 지역에 대한 공사는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p>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 고
최○○	<p>○ 청진3동 도로개선에 대한 의견</p> <p>1. 마을 발전과 미관상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봅니다.</p> <p>2. 본인의 378번지 답이 개선도로에 편입되어 일부 남을 우려가 있어 우려스러워 만약 확장시 전량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3. 개선도로를 직선화함으로 청진3동은 도리어 자동차 속도를 증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 가능성 있으며, 마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p>	<p>○ 본 사업은 기존 2차로의 선형 불량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하여 선형 개량, 길어깨 확장, 보도 설치 등의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를 최대한 준용토록 계획하였음</p> <p>○ 의견을 제시한 구간은 계획노선에 편입이 예상됨</p> <p>○ 교통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계획하였음</p>	
서○○	<p>○ 오도2리 88-5번지 땅 주인입니다. 이 땅은 지방도 20호선 건설에 의해 땅이 쪼개어 지면서 접도구역에 88㎡가 남아있는 상태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땅은 도로를 따라 길게 뻗은 삼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그래서 용도(농사, 주택건축)가 좀 애매한 상황에 있는 땅으로 남아 있기에 개인자산을 고려하여 이번 지방도 20호선 건설공사 시에는 88-5번지를 모두 편입 수용하여 주었음 합니다.</p>	<p>○ 의견을 제시한 구간은 계획노선에 편입이 예상됨</p>	
정○○ 외 16인	<p>○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건설공사 기본계획에 의하면 곡강리 통과구간의 경우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검토1안과 직선으로 통과하는 검토2안이 있는 바 저희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토1안과 같이 도로가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p> <p>○ 첫째, 검토1안과 같이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통행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먼지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p> <p>○ 둘째, 직선도로가 개통되면 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지고 농기계 사고 위험이 감소될 것입니다.</p> <p>○ 셋째, 직선도로가 개통되면 해일시 방파제 역할을 하여 피해가 예방될 것입니다.</p> <p>○ 넷째, 도로가 마을에서 멀리 설치되면 주거생활과 농산물 경작에 도움이 됩니다.</p>	<p>○ 곡강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였음</p>	